#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 발의연월일: 2024. 6. 7.

발 의 자 : 임이자 · 김태호 · 김형동

김위상 • 곽규택 • 김성원

김종양 · 김승수 · 최수진

권영세 · 이종배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력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방문취업동포에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및 제10조의2신설 등).

법률 제 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도입 업종"을 "도입 업종(또는 직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의2제2항"을 "제18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하며"를 "하며(제2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한국어능력시험"을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로, "응시하려는"을 "응시하거나 또는 평가를 받으려는"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국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중 "도입 업종"을 "도입 업종(또는 직종)"으로,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근로자(제1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로한다.

제9조제4항 중 "체결"을 "체결하거나 갱신"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특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후에"를 "후(제10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후)에"로 한다.

제12조제3항 후단 중 "도입 업종"을 "도입 업종(또는 직종)"으로 한다. 제18조 중 "날"을 "날(제10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근 로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제1항 및 제18 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 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다만, 1회에 연장받을 수 있는 취업활 동 기간의 상한은 3년으로 한다.
-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 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 2.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상 근무한 근로자.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능력, 사회통합 수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
- 4. 연장받는 취업활동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제1호의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는 근로자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의2"를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를 "입국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입 업종"을 "도입 업종(또는 직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전에"를 "전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전에"로 한다.

제2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 및 변경 허용 횟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 중 "업종별·지역별"을 "업종별·직종별·지역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활동 기간 제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의2제2항 본문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근로자 <u>도입 업종</u> 및	2 <u>도입 업종(또는</u>
규모 등에 관한 사항	<u> 직종)</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u>제18조의2제2항</u> 에 따른 외	4. 제18조의2제3항
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
성) ① (생 략)	성)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국
	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갖춘 사람을 포함할 수 있
	<u>다.</u>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u>③</u>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	
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	

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 료는 외국인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 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u>제1항</u>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 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
- ⑤ (생략)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저

- ① · ② (생 략)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u>하며(제2항에</u>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
함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b>.</b>
⑤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제4항
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
응시하거나 또는 평
<u>가를 받으려는</u>
·.
④ <u>제1항 및</u>
제2항
<u>.</u>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에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 근로자 <u>도입 업종</u>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u>제7조제1항</u>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 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 천하여야 한다.

- ④・⑤ (생략)
-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근로계약) ① ~ ③ (생략)
  -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 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u>체결</u>할 수 있다.

⑤ (생 략) <신 설>

도입 업종(또는 직종) -
<u>제7조제1항 및</u>
제2항
④·⑤ (현행과 같음)
6
외국인근로자(제1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
<u>.</u>
제9조(근로계약) ① ~ ③ (현행
과 같음)
4
<u>체</u>
<u> 결하거나 갱신</u>
<u>.</u>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특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국
인구직자 명부에 포함된 사람
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사

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 국인근로자는 입국한 <u>후에</u>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 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 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 을 받아야 한다.

#### ②・③ (생략)

-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② (생략)
  -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 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 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후(제10조의
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후)에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
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 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 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하여야 하다.

# ④ ~ ⑧ (생 략)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신 설>

		 도입	업종
<u>(또는</u>	직종)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 날(제10 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 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날)---.

-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제1항 및 제18조의2에도 불구하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다만, 1회에 연 장받을 수 있는 취업활동 기간 의 상한은 3년으로 한다.
  -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 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 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 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

- 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요청한 근로자
- 2.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업무 숙력도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능력, 사회통합 수준 등을 검증하 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 는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
- 4. 연장받는 취업활동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제1호의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는 근로자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u>④</u> 제1항 및 제2항-----

- ② (생략)
- ③ <u>제1항</u>에 따른 사용자의 재 고용 허가 요청 절차 및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특례) ① -----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 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 제18조의2제1항 및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제3항-----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 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 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 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u>제18조 및 제18조의2에</u> 가. <u>입국한 날부터 1년간</u>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 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 2. ----- 도입 업종(또는 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 직종)-----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3. (현행과 같음)

3.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 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 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 (생략)
  - 2.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3. (생략)
  - ② (생략)
-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 ④ (생 략) <신 설>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 소) ① -----

- 1. (현행과 같음)
- 2. ---- 전 또는 제10

   조의2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전에 ----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 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 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근로자 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 유 및 변경 허용 횟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저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 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 다.

- 1. 업종별ㆍ지역별 인력수급 1. 업종별ㆍ직종별ㆍ지역별 자료
- 2. (생략)
- ② (생 략)

세26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1

- 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